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153
----------	------

발의연월일 : 2024. 10. 31.

발의자 : 강민국 · 강명구 · 김상훈

유영하 · 이현승 · 박대출

윤한홍 · 권성동 · 김재섭

박덕흠 · 강준현 의원

(11인)

### 제안이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 등이 확대되면서 전자지급결제 대행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전자금융업자가 대가의 정산이나 이용자의 환불을 위해 임시로 보유하는 정산자금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재하여 해당 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 판매자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관련한 지급결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경영개선협약 체결 이외에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수단이 없어 전자금융업자의 경영지도기준 준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보유하는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감독수단을 마련하여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전자지급결제 과정에 관련된 이용자와 판매자 등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의미를 명확화하기 위해 자기의 사업을 위해 판매중개 등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에서 제외함(안 제2조 및 제3조).
- 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판매자등에 대가를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한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예치, 신탁,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운용토록 하고 해당 자금의 양도·담보를 금지하며,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하는 등 정산자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함 (안 제25조의4 및 제25조의5).
- 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대규모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을 강화함(안 제30조).
- 라.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계약 등으로 정한 기한 내에 대가를 정산하여 지도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안 제36조의3).
- 마.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미이행시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을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2조).

바.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 대주주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도록 함(안 제45조의3).

사.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이나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유용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45조의3).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가의 수수 및 정산대행이 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와 결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법률과 유사한 업무를 규율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제25조의4 및 제2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4(정산대상금액의 보호) ① 제28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이라 한다)는 정산대상금액[전자지급결제대행 또는 이용자에 대한 환불(다른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환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관리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정산자금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외부관리”)하여야 한다.

1. 신탁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②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을가입한 정산대상금액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관리기관과 제2항에 따라 정산대상금액을 직접 운용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정산대상금액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정산자금관리기관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판매자(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해당 판매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자등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산자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정산자금관리기관은 그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제6항제2호 또는 제

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산대상금액을 제1항에 따라 다른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외부관리하여야 한다.

⑨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정산자금관리기관이 제6항에 따라 정산대상금액을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등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산자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판매자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상금액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판매자등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⑩ 정산대상금액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판매자등,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대상금액으로 외부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⑪ 금융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정산대상금액의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⑫ 외부관리하여야 하는 정산대상금액의 범위 및 산정방법, 외부관리의 기준 및 방법, 정산대상금액의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정산대상금액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5(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3항제1호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운영하고자”를 “운영하고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1호에”를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로, “제3항제1호의”를 “해당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로, “제3항제2호”를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한다.

2.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하고 3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자(제29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외한다) :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 : 1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행위규칙)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수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3항 중 “제28조제1항”을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받은”을 “받거나 등록을 한”으로, “경영지도기준”을 “경영지도기준, 제25조의2에 따른 별도관리기준(제28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 한정한다), 제25조의4에 따른 외부관리기준(제28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받은 때

7. 제45조의3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제32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이 경우 제32조제5호의 “등록신청일”은 “제45조의3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일”로 본다)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대주주 변경등록)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

경등록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리하지 아니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자지급거래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25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51조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제5호 및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1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제51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기한 내에 정산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25조의4, 제25조의5, 제30조, 제43조, 제45조의3, 제49조, 제5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관리해야 하는 정산대상금액에 대한 경과조치) 제25조의4 제1항에 따라 외부관리해야 하는 정산대상금액은 이 법 시행 후부터는 정산대상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100분의 80 이상,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한다.

제3조(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 중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대주주의 변경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대주주의 변경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18. (생 략)</p> <p><u>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u></p> <p>20. ~ 22. (생 략)</p> <p>제3조(적용범위) ① ~ ③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p> <p>1. ~ 18. (현행과 같음)</p> <p><u>19.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전자지급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가의 수수 및 정산대행이 판매중개 등 다른 업무와 결부되는 경우는 제외 한다.</u></p> <p>20. ~ 22. (현행과 같음)</p> <p>제3조(적용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대가를 수수하여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u>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u></p>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법률과 유사한 업무를 규율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제25조의4(정산대상금액의 보호)

① 제28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이하 “전자지급결제대행 업자”이라 한다)는 정산대상금액[전자지급결제대행 또는 이용자에 대한 환불(다른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환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유·관리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정산자금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신 설>

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외부 관리”)하여야 한다.

1. 신탁

2. 예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②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정산대상금액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는 정산자금관리기관과 제2항에 따라 정산대상금액을 직접 운용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정산대상금액을 운용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정산자금관리기관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판매자(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용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판매자 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해당 판매자등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자등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자금융업무 전부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 경우

⑦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산자금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정산자금관리기관은 그 정산 자금관리기관이 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외부관리하는 정산대상금액을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산대상금액을 제1항에 따라 다른 정산자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다시 외부관리하여야 한다.

⑨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정산 자금관리기관이 제6항에 따라 정산대상금액을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등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정산자금관리기  
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판매자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판매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대상금액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  
사한 정보로서 판매자등의 청  
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보

⑩ 정산대상금액에 관한 청구권  
을 가지는 판매자등,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전자지  
급결제대행업자가 정산대상금  
액으로 외부관리하는 재산에 대  
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⑪ 금융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정산대상금액의 관리 상황을 분  
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⑫ 외부관리하여야 하는 정산대  
상금액의 범위 및 산정방법, 외  
부관리의 기준 및 방법, 정산대  
상금액의 관리 상황 점검 방식,

## <신 설>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생 략)

2. 자금이동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거래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만을 전달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이

그 밖에 정산대상금액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5(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제25조의4에 따른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내용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 내용의 세부사항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 <삭 제>



<신 설>

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8조에 따라 등록을 한 후 2분기 이상 계속하여 제3항제1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 내에 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자본금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 설>

제42조(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① ·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

다) : 5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 : 1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④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  
----- 해당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  
-----  
-----  
-----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  
-----.

제36조의3(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행위규칙)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수수한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 받거나 등록을 한 -----

항의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 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생 략)

<신 설>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①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설>

--- 경영지도기준, 제25조의2에 따른 별도관리기준(제28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 한정한다), 제25조의4에 따른 외부관리기준(제28조제2항제4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 한정한다)-----  
---.

④ (현행과 같음)

⑤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①-----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 사유를 시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신 설>

② ~ ④ (생 략)

<신 설>

제49조(별 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신 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  
상 받은 때

7. 제45조의3에 따라 변경등록  
을 한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가 제32조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때(이 경우 제32조  
제5호의 “등록 신청일”은 “제4  
5조의3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일”로 본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의3(대주주 변경등록) 제28  
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  
융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금  
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  
다.

제49조(별 칙)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  
반하여 선불충전금을 별도관  
리하지 아니하고 선불전자지

<p><u>&lt;신 설&gt;</u></p> <p>4. (생 략)</p> <p>② ~ ⑧ (생 략)</p> <p>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3. (생 략)</p> <p><u>&lt;신 설&gt;</u></p> <p>4. ~ 11. (생 략)</p>	<p><u>급수단을 이용한 전자지급거래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u></p> <p>5. 제25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외부 관리하지 아니하고 전자지급 결제대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p> <p>6.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② ~ ⑧ (현행과 같음)</p> <p>제51조(과태료) ① -----</p> <p>-----</p> <p>-----</p> <p>-----</p> <p>-----</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2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외부관리하지 아니한 자</p> <p>5. 제25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산대상금액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p> <p>6. ~ 13. (현행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p>
--	--

<p><u>&lt;신 설&gt;</u></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6. (생 략)</p> <p><u>&lt;신 설&gt;</u></p> <p>7. (생 략)</p> <p>③ · ④ (생 략)</p>	<p><u>1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u></p> <p>②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기한 내에 정산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자</u></p> <p>8. (현행 제7호와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	---